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9도7563 변호사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1433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호사법은 제112조 본문과 같은 조 제3호 전단에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한다고 함은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임을 표시 또는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법률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변호사'라는 명칭이 사용된 경위와 방법, 표시 또는 기재된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 변호사 자격에 관한 오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서 정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한 행위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_____
	대법관	김재형	_____
	대법관	노정희	_____
주 심	대법관	이흥구	_____